

의안번호	제 278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연월일 : 2008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외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
- 버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사업 반영
-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제명 변경
- 수익성이 없는 노선 재정지원 기준(1일 운행횟수가 왕복 5회 이하)인 운행횟수 제한 폐지(안 제2조)
-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적용범위를 확대(안 제4조)
 - 시내·농어촌버스 → 마을·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임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를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하고, “대중교통”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란 이용승객 편의제공과 운전자가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중 고속형과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 ①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택시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사업

4.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2항 중 “대중교통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비”로 하고, 같은항 제4호 “대중교통관련”을 “여객자동차관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대중교통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을”를 “제41조의6부터 제41조의9까지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지원사업"이라 함은 제 조 제 항 각호 사업의 경영 및 시설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 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운수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같은법 제37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1일 운행횟수가 왕복 5회 이하인 노선 중에서 이용승객이 적어 운송사업자가 입은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노선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란 이용승객 편의제공과 운전자가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삭제) 4.(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제 1호가목 중 고속형과 제3조제 2호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대중교통지원) ①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중교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공동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 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규칙이 정한 사항	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 ①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택시 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사업 4.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
②대중교통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3.(생략) 4. 기타 대중교통관련 수입금	②지원사업비 1.~3.(현행과 같음) 4. <u>여객자동차관련</u>
제5조(대상자선정 및 지원) ①제 4조제 1항의 대중교통지원사업 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선정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용자대상사업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자체 재원 또는 금융기관 용자알선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대상자선정 및 지원) ①..... <u>지원사업</u>..... ②(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시장·군수는 대중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대중교통지원사업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u>지원사업</u>..... <u>지원사업</u>..... ②<u>지원사업</u>.....
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제 4조제 1항제 2호의 운행결손액 산정 및 지급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 5 내지 제41조의8을 준용한다.	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제41조의6부터 제41조의9까지를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50조 (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12조의4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분기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계획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6 (손실보상금청구서등)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에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손실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7 (손실보상금의 산출 등) ①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실제승차인원 : 시·도지사가 당해 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공제한 횟수)

제41조의8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에 그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 (손실보상대상노선의 제외등)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86조의2 (제정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